### 보안업무 관리규정

제정 2012. 8.22 개정 2013. 7.24 시행 2013. 7.26 개정 2014. 5.28 시행 2014. 5.30 개정 2018. 1. 4 시행 2018. 1. 8 개정 2018. 6. 5 시행 2018. 6.11 개정 2021. 2.24 시행 2021. 2.25 개정 2023. 3. 3 시행 2023. 3.10 개정 2024. 3.19 시행 2024. 4. 1 개정 2025. 3.24 시행 2025. 3.27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적용범위) ①이 규정은 공사의 각 부서에 적용한다.
  - ②이 규정은 공사의 임직원 및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보안업무의 관장) 공사의 보안업무는 경영관리국장이 관장한다. <개정 2018.1.4>
- 제4조(보안심사위원회) ①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, 통제와 적절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보안심사 위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위원회는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안담당관 소관 상임이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, 감사실장, 기획조정실장, 광고산업진흥국장, 디지털혁신센터장, 정보보안담당관, 보안담당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회의 제반 업무처리를 위하여 비밀관리 소관부서의 장을 간

사로 둔다. <개정 2018.1.4.><개정 2021.2.24.><개정 2025.3.24.>

-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8.1.4><개정 2018.6.5.><개정 2021.2.24.><개정 2023.3.3.><개정 2025.3.24.>
- 1. 보안업무의 계획, 조정 및 통제
- 2. 신원 특이자의 보안관리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
- 3. <삭제>
- 4. 각 실·국장 및 지사장이 제청한 사항
- 5. 보안업무에 관한 사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6. 보안사고, 보안업무 관련 규정 위반 및 심각한 정보보안 위반사항의 심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
- 7.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제1항 각호의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 정보화 사업
- 7의2. 충무계획 및 전시 절차 등 비상대비 업무
- 8. 기타 보안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
-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- 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3.3.>
- 제5조(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) ①보안담당관은 경영관리국장으로

- 하며,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은 IT팀장으로 한다.
-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1. 보안업무의 관장
- 2. 보안업무 검열
- 3. 비밀파기에 관한 사항
- 4.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보안업무 처리에 필요한 조치
- ③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1.2.24.>
- 1. 정보보안지침 제정ㆍ개정 입안 및 운영
- 2. 정보보안대책의 수립
- 3.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
- 4. 정보보안분야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
- 5. 정보보안업무 지도・감독 및 교육
- 5의2. 정보보안 규정 위반자 처리
- 6.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
- 7.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
- 제5조의2(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수립) ①보안담당관은 매년 공사 보안 업무추진계획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보안업무추진계획은 보안담당관 소관 임무와 정보보안담당관 소관 임무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③보안담당관은 매년 1회 이상 보안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문제점 발굴과 시정방안 강구에 중점을 둔 보안업무 수행실태 확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#### [본조 신설 2023.3.3.]

- 제6조(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)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,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을 처 리한다.
- 제7조(비밀의 분류) ①비밀을 최초로 분류할 때에는 다음의 비밀 분류지침에 의한 분류근거를 원안본문 말미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.

(분류지침 ×호에 의거 ×급 비밀로 분류)

#### 비밀 분류 지침

- Ⅱ급 비밀: 대외에 누설됨으로써 국가 안보상 중대한 손해가 야기된다고 판단되는 문서
- 2. Ⅲ급 비밀: 대외에 누설됨으로써 공사의 안전과 사회질서유지면에서 중대한 손해가 야기된다고 판단되는 문서
- 3. 대 외 비 : 대외에 누설됨으로써 공사의 운영 및 관리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문서
- ②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 여부와 분류 비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의 2(비밀의 생산) ①비밀 생산시 비밀등급,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정하고, 생산현황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예고문 원본 : 2018.12.31 보존기간 : 3년 사본 : 2018.1.31

- ②비밀(대외비 포함)을 생산한 때에는 비밀 표지의 여백에 예고문을 기재하여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.
- ③보존기간은 필요성에 따라 영구, 준영구, 30년, 10년, 5년, 3년, 1년으로 구분하되 비밀보호기간 이상으로 책정하고,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비밀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연도 1월 1일로 한다.
- ④비밀은 보호기간 만료로 재분류된 후에도 보존기간 도래시까지 보관하며,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보존기간 도래시 파기한다.

### [본조 신설 2018.1]

- 제8조(비밀의 수발) 비밀의 수발은 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수발하며, 문서 주관부서의 직원을 비밀문서 수발담당자로 지정한다. <개정 2014.5.28> <개정 2021.2.24.><개정 2024.3.1
  - 1. 접수한 비밀은 비밀관리 소관부서의 장의 비밀관리기록부(별지 제 1호)에 등재한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해당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에게 인계하며,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 에 등재 처리한다.
  - 2. 비밀발송은 해당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비밀관리기록부, 비밀

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비밀관리 소관부서로 발송 의뢰하며, 비밀관리 소관부서에서는 발송 비밀을 검토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시행문을 발송한다.

- 3. 직접 접촉이 가능한 대외수발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며,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우편물의 접수기록번호에 의해 접수부 터 배달까지 기록·취급이 되는 우편제도(이하 "등기우편"이라 한다) 를 이용하여 수발한다.
- 4. 발송시 Ⅱ급 이하 비밀은 견고한 불투명 2중봉투를 사용하되 내 부봉투에는 해당비밀의 등급을 표시하고 외부봉투에는 비밀의 표시 를 하지 아니한다.
- 제9조(비밀의 보관 및 대외기관 제공) ① II 급 및 III급 비밀은 비밀관리 소관부서에서 비밀보관함에 보관하고, 대외비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각 부서별로 문서보관함에 보관한다. <개정 2021.2.24.>
  - ②전항에 따라 비밀을 비밀관리 소관부서에 인계인수할 때에는 각비밀관리기록부에 상호 날인하여 확인한다. <개정 2021.2.24.>
  - ③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3.19.>
  - ④ 제3항의 경우 자료제공 부서장은 제공하는 비밀자료의 필요부분 만을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, 반납일자를 표시하고 최소한의

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·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3.19.>

[본조제목개정 2024.3.19.]

- 제10조(비밀보관책임자) ①비밀관리 소관부서의 장에 보직되는 자는 따로 발령 없이 비밀보관책임자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1.2.24.>
  - ②제1항의 비밀보관책임자 외에 보안담당 실무자 1인을 부책임자로임명할 수 있다.
- 제11조(보관책임자의 교체) 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란에 인계인수하는 비밀 건수와 일시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인계인수 한다.

급 건

급 건

위 비밀을 인계인수함.

20 . . .

인계자 직급 성명 (인)

인수자 직급 성명 (인)

확인자 직급 성명 (인)

제12조(비밀수발대장, 비밀관리기록부, 비밀열람기록전) ①비밀수발대

장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비밀관리 기록부로 서 갈음한다. 대외비 문서도 비밀관리 기록부에 등재 관리한다. 비 밀관리 기록부는 Ⅲ·Ⅲ급 및 대외비로 분리하여 별도로 등재 및 관 리한다. <개정 2018.1.4>

②비밀관리기록부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비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. <개정 2021.2.24.>

1. 비밀관리기록부는 당해부서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비밀을 구분하여 기록 유지한다.

2. 같은 내용의 비밀을 2부이상 접수한 때에는 매부마다 난을 달리하여 기록한다.

3. 비밀관리기록부에 접수와 발송을 혼용 기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, 접수문서는 청색 또는 흑색, 발송문서는 붉은색으로 표시한다.

4. 비밀관리 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다. 다만, 일제정리, 사용종료,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비밀만을 이기하고 구 관리기록부 최종 기록란과 신관리기록부 최초란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

### "구 관리 기록부"

급 건

급 건

### 위 비밀을 신 관리기록부에 이기 사용함

20 . . .

이기자 직급 성명 (인)

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(인)

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(인)

#### "신 관리 기록부"

급 건

급 건

위 비밀을 구 관리기록부에서 이기 사용함

20 . . .

이기자 직급 성명 (인)

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(인)

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(인)

③Ⅱ·Ⅲ급 비밀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 비밀열람기록전을 부착하고 비밀을 열람한 내용에 따라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 및 서명한다. 다 만 결재자는 열람기록전에 서명하지 않는다. <신설 2018.1>

④예고문이 도래하여 비밀문서 파기시 열람기록전은 분리하여 파기자, 파기확인자,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1>

제13조(관리번호 부여) ①관리번호는 생산 및 접수한 순위에 따라 누

- 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.
- ②동일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, 보관할 때에는 매부마다 따로 관 리번호를 부여한다.
- 제14조(비밀취급인가) ①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인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한다. <개정 2025.3.24.>
  - 1. 임원(사장, 전무이사, 보안담당관 소관 상임이사)
  - 2. 보안담당관
  - 3. 비밀관리 소관부서의 장, 비상계획관
  - 4. 정보보안담당관 및 실무자
  - 5.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
  - ②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자의 직책변경 및 기타사유로 비밀 취급인가가 해제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유를 보고한다. <개정 2021.2.24.>
- 제15조(비밀의 통제방법) ①II급· III급 비밀을 발간(비밀의 생산 및 복사·복제), 열람,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 발간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통제와 승인을 받는다.
  - ②대외비를 발간(비밀의 생산 및 복사·복제), 열람, 대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 발간의뢰서를 해당 부서 분임보안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사전에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③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대외비의 통제를 하였을 때 별지 제2호에 의한 비밀(대외비) 통제부에 등재하여야 한다.

- 제16조(비밀발간 통제) ①비밀 및 대외비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발간의뢰서를 제출하고 비밀보관 책임자의 사용 통제하에 발간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수단(PC 등)을 통한 비밀의 발간시에는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별도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비밀과제 외주용역) ①비밀 및 대외비 과제를 외주용역하고자할 때에는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1. 용역기관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
  - 2. 용역참가자의 신원확인, 보안준수의무 고지, 서약집행 조치 등의 시행
  - 3. 용역과제에 대하여는 사전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
  - ②비밀 및 대외비 과제의 외주용역 주관부서는 사전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용역과정의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,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.
  - ③비밀 및 대외비 과제에 대한 외주용역 계약 체결시 계약서상에 비밀엄수 의무 및 용역과제 내용을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사용. 공개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- ④외주용역이 종료된 때에는 외주용역 주관부서는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전량을 회수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안전지출 및 비밀의 파기) ①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지출이 요구

- 될 경우 별표 1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시행한다. <개정 2021.2.24.>
- ②비밀의 파기는 파쇄기를 이용한 세절 또는 소각 등 방법으로 원 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. <개정 2021.2.24.>
- ③비밀의 파기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관책임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한 입회자의 참여 아래 처리담당자가 파기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시설보안) ①보안담당관은 시설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한다.
  - ③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구역의 관 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인적보안) ①공사의 임직원 및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  - 1. 보안 관련 규정의 준수
  - 2. 공사의 자산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
  - 3.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음
  - ②보안담당관은 공사의 임직원 및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력에 대해서 보안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- 제21조(보안사고) ①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의 일시, 장소,

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사장(참조: 보 안담당관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
- 2. 직원의 행방불명, 납치 등 인사상 사고
- 3. 시설물에 대한 방화 및 파괴
- 4. 차량 등 주요장비 및 기재의 도난
- 5. 기타 보안관련 사규를 위반한 사고
- ③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장은 보안사고자에 대하여 경고 및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거나,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할 수 있으며, 또한 필요한 경우 민·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22조(준용사항) 공사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용한 다. <개정 2013.7.24>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<2013.7.24.>

이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14.5.28.>

이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<2018.1.4>

이 규정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18.6.5>

이 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<2021.2.24.>

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<2023.3.3.>

이 규정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24.3.19.>

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<2025.3.24.>

이 규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

#### 1. 목 적

이 계획은 전시사변, 폭동, 천재지변,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공사가 보관·관리중인 암호자재·비밀문서 및 누설될 경우 국가 및 공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문서(이하 "비밀 등")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비밀 및 중요문서의 안전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- 가. 공사에서 보관 관리중인 비밀문서 및 암호자재
- 나. 비밀은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공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 는 중요문서

#### 3.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(상황)

- 가. 전쟁, 사변,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비밀 등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
- 나. 천재지변, 화재 등으로 비밀 등이 누설, 전파, 분실, 도난, 손실 또는 파괴될 우려성이 있을 때
- 다. 적, 무장공비, 폭도,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비밀 등을 탈취 당할 우려가 있을 때
- 라. 기타 현 보관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 한 상황이 발생한 때

#### 4. 반출 및 파기계획의 시행책임

- 가. 본 계획의 시행 총책임은 사장의 명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이 행한다.
- 나. 본지사 각 부서별로 보관중인 비밀 등에 대한 시행책임은 보

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.

다. 분임보안담당관은 비상사태시 안전반출 및 파기를 위해 평상 시 대상 비밀 등의 선정기준을 확인한다.

#### 5. 반출 및 파기장소(본사)

#### 가. 반출장소

- (1) 위험사태가 본사건물내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프레스센터 지하주차장 3층 창고로 반출한다.
- (2) 위험사태가 본사건물내에 미칠 경우에는 광고문화회관 또는 방송회관으로 반출한다.
- (3) 위험사태가 본사건물내에 미칠 우려가 있고 광고문화회관 또는 방송회관으로 반출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 안담당관 판단하에 현재 보관장소에서 파기할 수 있다.
- 나. 파기장소 : 1차(현사무실 파쇄기 등 활용), 2차(이동사무실내 파쇄기 등 활용)
- 다.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상황에 따라 반출 및 파기장 소를 변경할 수 있다.

### 6. 반출 및 긴급파기절차

가. 상황파악 및 지출명령

보안담당관은 위 "3항"에 의한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각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.

- 나. 분임보안담당관의 반출조치
  - (1) 반출지시, 비밀 등 반출요원소집 : 반출요원은 비밀보관 부 책임자 및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되고, 필요할 경우에는 비인가자를 보조요원으로 활용한다.
  - (2) 비밀 등의 반출작업 : 반출요원은 비밀 등을 비상반출 행당 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.
  - (3) 반출 : 반출요원은 승강기, 비상계단 및 이후 영업지원차량

- 을 이용하여 비밀 등을 반출장소까지 반출한다.
- (4) 반출시의 호위: 반출시의 호위는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한다.

#### 7. 반출 또는 파기후의 보안조치

- 가. 반출요원은 반출한 비밀 등을 반출장소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임시보호 조치를 취한다.
- 나. 보안담당관은 반출한 비밀 등의 항구적인 보호조치를 위한 대책을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지시한다.
- 다. 파기한 경우에는 육안으로 문서내용을 식별할 수 없도록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한다.
- 라.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또는 파기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을 점 검·확인하여야 하며, 안전반출 및 파기에 따른 조치사항 및 결 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.
- 마. 파기한 비밀중 접수분은 해당 발행기관에, 파기한 암호자재는 제작(배부)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 <개정 2018.1.>

# ( II III 급 )(대 외 비 ) 비 밀 관 리 기 록 부

부서명: ○○국 ○○팀 보관책임자:

| 관    |             | 수   | 수 발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- 1    |   |          |   |          | 예      |          | - 1      |          | 재 · | 분 류      |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|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
| 관리번호 | 년<br>월<br>일 | 발행처 | 수신처 | 문 A<br>번 3 | †   1<br>5   3 | 비밀<br>등급 | 형<br>태 | さ | <u> </u> | 명 | 사본<br>번호 | 고<br>문 | 처리<br>담당 | 보관<br>장소 | 등급<br>변경 | 파기  | 파기<br>확인 | 근거 | 참 조<br>(팀장) |
|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|             |

# 비 밀 열 람 기 록 전

| 관 리 |  |
|-----|--|
| 번 호 |  |

제목: []급비밀

| 년 월 일 | 소속 및 직책 | 인가등급 | 생년월일 | 성 명 | 열람목적 | 서 명 |
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
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
(별지 제2호 서식)

# 비밀(대외비)통제부

| 일련<br>번호 | 일 | 자 | 발행처 | 수신처 | 제 | 목 | 비밀등급 | 사본수량 | 형 | 태 | 참여자 | 발간장소 | 刊 | 고 |
|----------|---|---|-----|-----|---|---|------|------|---|---|-----|------|---|---|
|          |   |   |     |     |   |   |      |      |   |   |     |      |   |   |
|          |   |   |     |     |   |   |      |      |   |   |     |      |   |   |
|          |   |   |     |     |   |   |      |      |   |   |     |      |   |   |
|          |   |   |     |     |   |   |      |      |   |   |     |      |   |   |
|          |   |   |     |     |   |   |      |      |   |   |     |      |   |   |
|          |   |   |     |     |   |   |      |      |   |   |     |      |   |   |
|          |   |   |     |     |   |   |      |      |   |   |     |      |   |   |
|          |   |   |     |     |   |   |      |      |   |   |     |      |   |   |
|          |   |   |     |     |   |   |      |      |   |   |     |      |   |   |

268m/m×190m/m 신문용지 50g/m²

(별지 제3호 서식)

## 비밀발간의뢰서

수 신 보안담당관 아래와 같이 비밀을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제 |     |     | 목 |       |           |  |   |   |     |  |     |    |    | 비밀등   | 통급 |  |  |
|---|-----|-----|---|-------|-----------|--|---|---|-----|--|-----|----|----|-------|----|--|--|
| 발 | 간   | 구   | 분 | 발간규격・ |           |  |   |   |     |  | 7격· | 지질 |    |       | 절지 |  |  |
| 발 | 간   | 부   | 수 |       |           |  | 부 | ) | 사정수 |  |     |    | 부  |       |    |  |  |
| 배 | 투   | 1_  | 선 |       |           |  |   |   |     |  |     |    |    |       |    |  |  |
| 발 | 간   | 기   | 간 |       | 20부터 20까지 |  |   |   |     |  |     |    |    |       |    |  |  |
| 자 | 체 보 | 안 대 | 책 |       |           |  |   |   |     |  |     |    |    |       |    |  |  |
| 참 | 여 🌣 | 정   | 자 | 직     | 급         |  |   | ) | 성 명 |  |     | 刊  | 밀취 | 급인가등급 |    |  |  |
| 明 | 3   | 玊   | 선 |       |           |  |   |   |     |  |     |    |    |       |    |  |  |

|        | 20   |          | •    |
|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
| 실 • 국징 | +    |          | (인)  |
| 위      | 비밀발건 | <u> </u> | 승인함  |
|        | 20   | •        |      |
| 보아담당   | 과    |          | ( 0) |